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채용공고 제2026 - 23 호

2026년도 제6회 공무직근로자(보호계호요원) 채용 공고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2026년도 제6회 「공무직 근로자(보호계호요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1월 6일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구분	선발직종	선발예정인원	담당예정업무
공무직근로자	보호계호요원	남 1	(담당업무 참고)

2. 담당업무

○ 보호계호요원 : 보호외국인 관련 전반 업무 지원* 등

* **보호외국인 감시, 호송 및 계호, 입·퇴실지원 및 검신, 순찰 및 경비, 면회업무 및 물품정리, 외국인 보호업무 관련시설 안전관리 등 보호 관련 전반적인 업무 지원 등**

* 금번 채용 대상 직무는 남성 보호외국인 관련 업무 지원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응시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합니다.

2. 신분사항 및 근로조건

○ 공무직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무기계약)

❍ 급여기준 : (2026년 기준) 월 고정급 3,064,860원(세전) ※ 법무부 임금 기준안에 따라 변동 가능

❍ 맞춤형 복지포인트 : 소속기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

❍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근로시간 **【3교대근무】** 1주: 주간근무/ 2·3주: 야간근무

※ 근무형태 및 근로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응시대상 및 자격

가. 응시자격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관사 제공 없음**

❍ 신체적, 정신적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나. 우대사항 [서류전형만 우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구분	우대사항
근로자 (보호계호)	○ 경비·보안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1년 이상인 자(연차별 차등 배점) -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의 경비 관련 근무경력 - 경찰공무원 . 경호공무원 . 직업군인(부사관 이상) . 교정직 공무원 경력 등 ○ 무도 단증 보유자(단수별 차등 배점) - 태권도, 유도, 검도 2단 이상 보유자(단일종목에 한하며,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급수별 차등 배점)

다. 가점 사항 [서류전형/면접시험 가점,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table>
<tr><td></td><td>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td><td></td></tr>
<tr><td rowspan="5">사회형평가점</td><td>「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td><td rowspan="5">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td></tr>
<tr><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td></tr>
<tr><td>「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td></tr>
<tr><td>「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td></tr>
<tr><td>「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td></tr>
<tr><td colspan="3">【가산점 적용】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금번 채용은 채용분야별 각 모집인원이 4명 미만으로 법정가점 미적용)
■ 법정가점과 사회형평가점은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출하여야하며,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귀책임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 확인하여야 함</td></tr>
</table>

4. 채용방법

가. 제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10배수 초과 응시한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 성적이 높은 순으로 10배수 이하의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최종 후순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 10배수 이하 응시한 경우, 응시자격·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심사기준 적격 여부에 따라 합격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 근로자로서의 소양(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평가) : 60점 (차등적용)

■ 관련 분야 근무경력 : 20점 (경력기간별 차등 적용) ■ 무도자격증 : 10점 (급수별 차등 적용) ■ 응급구조사 자격증 : 10점 (급수별 차등 적용)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가산)

나. 제 2차 시험 : 면접시험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험 평정 요소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가요소를 각각 상(10점), 중(6점), 하(2점)로 계량화하여 평가

다. 최종 합격자

-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에 있어**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사회형평대상자
  ③ '사회형평대상자'를 제외한 우대사항 해당자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라. 예비 합격자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 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발 가능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채용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26.11.6.(금) ~ 11.13.(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원서접수 기간	'26.11.9.(월) ~ 11.13.(금)	이메일 및 방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11.20.(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면접시험(예정)일	11.25.(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3층 중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일	11.27.(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채용후보자 등록	11.30.(월)~12.2.(수)	인천출입국·외국인청 3층 서무실
채용예정일	'26.12.9.(예정)	경찰청 신원조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신원조사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 최종합격 후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 예정일 변동 가능성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처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3층 서무팀

※ 주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서해대로 393

❍ 접수기간: 2026.11.9.(월) ~ 11.13.(금)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방문 접수: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접수: mseo5217@korea.kr (접수종료일은 18:00 까지만 인정)

※ 이메일 접수 시, 담당자로부터 접수 **회신을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일 이상 접수 회신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요망 (T. 032-890-6406)

※ 이메일 접수 시,

① 이메일 제목 "**남자 보호계호요원 OOO** " 명시

② 제출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합본하여 제출

③ 제출서류 서명란에 자필 서명 누락 여부 재확인

※ 이메일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채용공고 사이트에 게시

7.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됨

*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미사용)**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1)	ㅇ 제출내역 체크 후 자필 서명
2. 응시원서 (별지서식 2)	ㅇ PC로 작성·제출 가능하나 양식을 변경한 경우 접수하지 아니함 ㅇ 자필로 작성할 경우 정자로 기재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이력서 (별지서식 3)	ㅇ 관련분야 경력은 최근 경력부터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본인의 응시분야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PC로 작성 가능, 단 서명란 자필기재
4.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4)	ㅇ A4 3매 이내로 작성
5. 주민등록 초본, 등본 각 1부	ㅇ 주민등록번호 후단 미표시 ㅇ 주민등록 초본에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구 분	내 용
6.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5)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6) 8.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별지서식 7) 9.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관련 체크리스트 (별지서식 8) 10. 공정채용 확인서(별지서식 9)	○ **자필 기재 및 서명**
※ 아래 사항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우대요건) 경력(재직) 증명서	○ 우대경력 확인가능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주당근무시간표기)를 정확히 기재, 불명확할 경우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담내역 등) - '연수', '실무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폐업회사의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경력입증 기타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2. (우대조건)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증(무도,응급구조사 등) 사본 제출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해야 함) ○ 태권도,유도,검도에 한하여 인정하며 품증은 단증으로 변경 시 인정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만 인정(기타 단체 불인정)
3. (가점) 법정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1부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해야 함)
4. (가점) 사회형평가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수급기간 명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수급기간 명시)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해야 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최종합격자 등록 시 (신원조사 필요서류 별도)

- 기본증명서 1부(본인기준,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사진(반명함판 3.5cmX4.5cm) 1매
- 급여통장사본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8.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붙임 10】 양식을 작성하여 사전 연락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 청구기간: 2026. 12. 21. ~ 2027. 1. 20., 주말·공휴일·대체공휴일 제외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채용기관에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접수여부를 채용기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4.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보관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나.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법무부 비공무원 공정채용 제25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실시합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응시요건 부적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 11. 13.(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바랍니다.(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20분 전까지 면접대기장소에 도착·대기 바랍니다.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의 중요한 사항이 미비(서명 누락 등)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임용 및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의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서무팀(☎ 032-890-6406, 6407)으로 연락 바랍니다.

(별지서식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번호	제출서류명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
2	응시원서	필수	☐
3	이력서	필수	☐
4	자기소개서	필수	☐
5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주민번호 후단 미표시 발급)**	필수	☐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필수	☐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
8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필수	☐
9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필수	☐
10	공정채용확인서	필수	☐
11	우대조건 관련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포함)	해당자만	☐
12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만	☐
13	가산조건 관련 법정가점 증명	해당자만	☐
14	가산조건 관련 사회형평가점 증명	해당자만	☐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별지서식 2)

응 시 원 서

본인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시행 2026년 제6회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보호계호요원		(한자)	
생월/생일	※ 생년기재 불요 월 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사항 없음	
주 소	(㉒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

응 시 표

※응시번호		응시분야	보호계호요원
성 명	(한글)	(한자)	
년 월 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보호계호요원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 현 주소지(주민등록)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모두 기재**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지서식 3)

이 력 서

1. 인적사항				
성 명		응시분야		
병역사항	☐ 필 ☐ 미필 ☐ 면제 ☐ 해당사항 없음			
주 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추가항목	우대요건	☐ 자격증 등 :		
	가점요건	☐ 법접가점 요건 : ☐ 사회형평가점 요건 :		

2. 경력사항

근무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		
	~		

3. 자격증 및 특기사항

* 자격증명, 특기사항에 대해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특기사항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_____(서명)

※ 경력·자격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이용 가능

※ 경력·자격 등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별지서식 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분야	

* 작성하실 때 아래 내용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서명은 자필로 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내용 중에 **출신학교명과 출생지, 부모(배우자)직업 등 개인신상은** 밝히지 않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응시자

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서류전형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2026. . . 작 성 자 : (서명)

(별지서식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당해 경쟁채용시험 진행을 위한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메일, 경력,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의거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6년도 제6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제공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3.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근로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성명 : (서명)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서식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2026년도 제6회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서식 7)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본인은 2026년도 제6회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등 법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결격사유 >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서식 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해당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년 월 일

성 명 : (서 명)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서식 9)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서식 10호)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근무형태 (상근/비상근) ②	비고 ③
	부터	까지					
	(예시) '20.6.30	'22.7.1	00 여행사		사무보조	주40시간 근무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근무형태 : 주당 00시간 근무 기재
③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 등 기재)**

(별지서식 11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